

창원지방법원 2024. 11. 8 선고 2024가단2480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1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C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
60.99㎡를 인도하고,
나. 2024. 5. 28.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75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고,
다. 각 1,6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9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미선

별지